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16 October 2017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및 공화당 세법개정안 발표(Tax Reform: UNIFIED FRAMEWORK FOR FIXING OUR BROKEN TAX CODE)

2017년 9월 27일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세법을 간소화하여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미국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주요 원칙을 담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Unified Framework"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조세입법위원회의 목표와 동일한 것으로, 복잡한 세법을 간소화하겠다는 축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세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Framework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세법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Framework 목표

- 중산층의 세제 지원 강화
- 세법규정 간소화
- 법인세(특히, 중소기업) 부담 완화
- 자본유출, 일자리 및 세수의 해외이전 방지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록 상무이사

(Tel: 02-2112-0982)

- 과세기반 확대, 특수집단 세제혜택 및 과세 사각지대 (loopholes) 축소를 통한 공정성 강화

세법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세(Individual Tax)

- 표준세액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기준공제액 대비 약 2 배 가량 증가 → 미혼자 \$12,000, 기혼자 \$24,000
- 개인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소득세 구간을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 10%, 25%, 35%로 단순화하고 누진세 최고 소득세율을 39.6%에서 35%로 인하
- 자녀부양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2017년 소득세 신고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1,000 이상 환급되고 노인 등 성인 부양가족에게도 1인당 \$500의 세액 공제 혜택 제공
-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
- 주택담보대출이자(Mortgage Interest)와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혜택 폐지
-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임금, 교육, 퇴직연금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효율적인 세금제도 마련

KPMG의 의견

발표된 Framework는 조세입법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 7월 발표된 “공동 성명서(Joint Statement)”와는 달리 짧지만 영향력 있는 내용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Framework에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 없이 원칙만 제시되었으며 발효 시점이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추후 입법 과정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이 공식화되면서 Framework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Framework는 기존 세법과 같이 기본적으로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구간, 각 세율별 소득 구간(Income Threshold), 자녀부양공제액, 등 구체화되어야 할 항목들이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 항목별 공제 혜택 폐지와 관련하여 표준 세액공제액만 2배가량 증가하고 대부분의 항목별 공제 혜택을 폐지시킬 경우 항

특별 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세

- 자영업자, Partnership 및 S-corp과 같이 개인소득 대신 사업 소득을 기반으로 과세하는 업종의 최고세율 25%로 인하
- 대기업 법인세율은 현 35%에서 20%로 인하-선진국의 평균 법인세율인 22.5%보다 낮은 수준
-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 및 이중과세 해소 방안 모색
- 2017년 9월 27일 이후, 향후 5년간 발생한 설비투자비용에 대한 일시 비용 처리 허용
- 기업의 순이자비용 공제 부분적으로 제한 예정, 구체적 내용 부재
- 결손금 이월하여 공제받는 Section 199 제도 폐지, 이 외 다수의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이나, 연구개발비(R&D) 및 저소득층을 위한 세액 공제는 일부 유지할 계획
- 글로벌과세제도(Global Tax System)에서 속지주의 과세세제도 (Territorial System)로 전환 - 해외 자회사로부터 취득한 배당 수익은 100% 공제(단, 미국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 세율인하를 통해 조세피난처를 찾아 떠난 기업들의 회귀를 기대

KPMG 의견

-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소규모 또는 가족소유의 기업에만 국한된다고 명시하였지만, 현 기준에서 시사하는 바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설비투자비용처리 관련해서 즉시 상각 처리 허용에 제외되는 구조물("Structure")에는 빌딩 및 토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해석 됩니다.

- 이자비용 공제 한도 제한 규정은 C-corp에게만 적용된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자비용 공제 한도 제한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연구개발비 및 저소득층을 위한 일반사업경비 공제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 공제 혜택("Business Credit")이 폐지될 경우, 수립한 예산에 맞는 세수입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를 위하여 다른 항목의 사업 공제 혜택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속지주의 과세제도로 과세 방식을 전환하여, 국내로 자금을 유인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사 소재지로서의 추가 세 부담 없이 다국적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조세 경쟁력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베트남: 특수관계자간 로열티 거래 및 그룹 내 용역비용 공제에 대한 조사 강화(Vietnam: Transfer pricing audits of related-party royalty, service fee payments)

베트남 과세당국은 2017년 6월 19일 기술 용역료 및 로열티 거래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No. 07/2017/QH14 ("LTT 2017")을 새롭게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과세 동향에 따르면, 과거 법인세 신고 시 특수관계자 간 지급된 기술용역료 및 로열티 비용에 대한 손금 산입을 허용한 부분에 대해 검토 및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LTT 2017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LTT 2017 규정은 계약서 수정 또는 연장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기술이전(로열티)" 계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 이전가격 규정인 Circular 117/2005/TT-BTC 및 Circular 66/2010/TT-BTC 내에는 무형자산 및 그룹 내 용역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나, Decree 20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실질 과세 원칙(substance over form)"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거래되지 않는 특수관계자 거래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않고

납세자의 영업활동에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련 금액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기 예시 참조)

- 특수관계자에게 실제로 로열티를 지급하였지만, 납세자는 기술이 실제로 이전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 베트남 소재 계약제조업 법인(Contract Manufacturer)이 순 매출액 기준으로 로열티를 지급한 경우
- 현지 납세자에게 직접적, 경제적 또는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않아서 기업의 수익 창출 등 사업 목적상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그룹 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주주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 중복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새롭게 도입된 기술이전(Law on Technology Transfer) 관련 규정은 납세자에게 특수관계자 간 체결한 기술사용 계약서를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무형 자산 또는 그룹 내 용역 거래가 있을 시 회사는 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수 증빙서류를 준비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Decree 20 규정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MF"), 개별기업보고서 ("LF") 및 국가별보고서("CbCR")를 일관성 있게 작성
- 무형 자산 및 그룹 내 용역 서비스에 대한 지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 간 체결한 계약서 사전 검토
- 해당 과세당국에 기술이전 계약서 등록
- 관할 과세당국이 과거 비슷한 사례를 조사하여 사전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정상가격사전협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s, 이하 APA) 신청

[**말레이시아: 국가별보고서 규정 \(Country-by-Country Reporting in Malaysia\)**](#)

국가별보고서 관련 규정이 2016년 12월 23일 날 공포되었습니다. 국가별보고서 규정은 2017년 1월부터 발효되며, 말레이시아 소재 다국적 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 억 링깃(약 8,000 억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가별보고서 규정 준수를 위해 말레이시아 과세당국은 최근 국가별보고서 안내자료 및 템플릿과 사전신고 샘플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전신고서

국가별보고서 규정은 다국적기업 그룹에 말레이시아 거주 법인은 사업연도의 말일 혹은 이전까지 법인이 최종 지배기업 혹은 대리 제출 의무자 인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모회사가 말레이시아 거주자인 다국적기업 그룹들은 관할 그룹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주체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국적 기업 그룹 소속의 구성원이 말레이시아 거주 법인이지만 제출 주체가 아닌 경우, 해당 회사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자의 인적 사항 및 조세 관할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 그룹의 말레이시아 거주 법인 중 매출액이 30 억 링깃(약 8,00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속된 다국적 기업 그룹이 말레이시아 혹은 해외투자 기업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세무서에 소속 그룹의 보고 주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최초 사전신고서 제출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 사업연도에 종료하는 법인들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입니다.

말레이시아 과세당국은 사전 신고서 샘플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하기와 같은 양식으로 공시하였습니다.

- Notification letter of Reporting Entity
- Notification letter of Non-Reporting Entity

국가별보고서

국가별보고서는 하기 말레이시아 과세당국에서 발표한 템플릿(표 1~3)에 따라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표 1. 조세관할권별 소득배부, 세금, 사업활동에 대한 개요

표 2. 조세관할권별 다국적기업에 속해있는 법인의 리스트

표 3. 추가정보

납세자는 말레이시아 과세당국에서 발표한 하기 지침사항에 따라서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작성지침 (본 양식에 사용된 주요 용어들의 정의)
- 본 양식에 사용된 주요 용어들의 정의
- 주요 작성지침 (표1 및 2 작성과 하기 안내사항에 따라서 작성 필요)
- 국가별보고서 도입 안내사항 (2017년 9월 업데이트)

국가별보고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017 년 12 월 31 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